

해양 지명의 전문성과 특수성

임영태¹⁾, Lim, Young Tae · 황세열²⁾, Hwang, Se Yeol

최윤수³⁾, Choi, Yun Soo · 고준환⁴⁾, Koh, Jun-Hwan

¹⁾ 정회원 ·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과 · 석사과정 · 032-880-0560 (E-mail : lims5787@krpost.net)

²⁾ 정회원 ·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장 · 032-880-0406 (E-mail : hsy@nori.go.kr)

³⁾ 정회원 ·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과 교수 · 공학박사 · 02-2210-2430 (E-mail : choiys@uos.ac.kr)

⁴⁾ 정회원 ·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과 교수 · 공학박사 · 02-2210-2182 (E-mail : jhkoh@uos.ac.kr)

1. 서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갯벌과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섬과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3,153개의 크고 작은 섬과 서, 여 외에도 수많은 암초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부의 섬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표준화된 해양지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명(地名)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되어있는 중앙지명위원회(위원장 국립지리원장)에서 관장하는 육상지명(이하 "지명" 이라 함)과 수로업무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둔 해양지명위원회(위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에서 관장하는 해양지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지명은 육상지명과 해양지명을 구분하지 않고 지명 전체를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제정·고시하여 왔다.

수로업무법 제 2조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해양지명(海洋地名)"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 및 해구(海溝) 등의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관심 밖이었던 해양지명을 중심으로 해양지명이 갖는 전문성과 특수성, 해양지명위원회의 발족 동기와 의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며 해양지명의 제정·고시가 갖는 의미를 지명과 비교하여 앞으로 해양지명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양지명의 현황

본 연구를 위해서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중앙지명위원회 운영규정, 해양지명위원회의 발족과 관련된 법률개정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설명자료, 세 차례의 회의 개최를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회의록 및 이미 발표된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2002년 7월 1일 발족한 해양지명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해양지명의 제정·고시를 위하여 3차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 2002년 9월 3일 ~ 7일 (5일간), 동해안 경주시, 포항시, 영덕, 울진, 동해시

2차 : 2002년 11월 4일 ~ 10일 (7일간) 남해안 거제시, 통영시, 여수시, 완도군,

3차 : 2003년 2월 4일 ~ 9일 (6일간) 남해안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 남해군, 사천시, 순천시, 해남읍

3차에 걸친 현지조사 결과 확인한 성과는 동·남해안 모두 각 시·군에서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사학자와 현지 문화관광과 시·군·구의 지방지명위원회에서 지역별로 과거부터 전래되어오던 설화, 구비문학 등을 통해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명은 매우 상세하게 조사 보고 되고 있으나 어촌을 중

심으로 한 해안가의 여, 암, 초등의 해양지명은 보고된 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문헌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그나마 생존해 계시는 연로하신 마을 어른들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정도이었다.

그동안 지명은 지적정리를 위하여 조사되고 지명위원회의 꾸준한 활동으로 많이 정비되어 왔지만 해양지명은 그러하지 못하여 온 것이 현실로서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해양지명은 표준화된 지명이 없어 관련기관, 연구기관, 관련학계 등에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지명을 붙여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해저지형이 각각 다른 해양지명으로 명명되어 많은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였다.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리 후포등대에서 진북 80°방향 24.5km지점에 있는(수심 5.3m) 동해안의 대표적인 수중 암초인 “왕돌초”는 그동안 왕돌초-왕돌암-왕돌잠-후포뱅크(Hupo Bank) 등으로 명명되어 왔으나 해양지명위원회는 2002년 제2차 회의결과 2002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2 - 102 호로 공식 해양지명을 “왕돌초”로 심의·의결하여 고시하였다.

해양관측장비의 발달로 인하여 바다 속에 있는 해산, 해구, 해령, 해저협곡, 심해평원 등의 지형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형들이 현재 무명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미·일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양지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미국은 1890년 지명위원회를 설립 상설위원회는 국내지명위원회(DNC: Domestic Names Committee)와 국외지명위원회(FNC : Foreign Names Committee)로 자문위원회는 남극지명자문위원회와 해저지형지명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DNC는 미국내의 지명에 대한 표기의 표준화작업을 수행하며 FNC는 미국외부의 지명에 대한 자료수집 및 표준지명철자법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해양지명위원회(설립 ; 1966년)는 해상보안청 수로부를 중심으로 지질조사소, 해양과학기술 센터, 동경대학 해양연구소, 일본수산학회, 일본지질학회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해저지명을 결정(1996년 1,212개) 해도, 해저지형도 등에 기입하고 있다.

예를 든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해양지명위원회를 분리 독립된 기구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해저지형도 및 해도에 자국어로 해양지명을 표기하여 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루바삐 표준 해양지명 편람을 제정하여 해저에 있는 지형에 대한 해양지명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양지명을 국제수로기구(IHO)/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에 상정하고, 우리 이름의 해저지형도 및 해도를 간행함으로써 국제적 입지 확보와 아울러 여러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양지명을 심의·의결하여 국가공인의 표준 지명으로 사용함으로써 관련기관, 연구기관, 관련학계 등 해양지명 사용자의 지명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초·중·고교 교과서에 표기하도록 하여 대 국민 홍보를 통한 해양에 대한 관심의 고취와 친밀감 조성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해양지명의 전문성과 특수성

해양지명은 지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선박의 항해안전과 직결되는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위치와(경도·위도: 지리적 위치) 지명이 갖는 표준용어의 선택이다.

지명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위험의 여부를 당사자가 스스로 인지 할 수 있어 근본적으로 해양지명이 갖는 전문성 및 특수성과는 구별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고 있을 때 도로 공사중 안내판을 보거나 또는 안내판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공사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한 다른 길을 택하여 목적지까지 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은 오직 해도에만 의지하여 안전한 항로를 채택 목적지로 항해한다. 이 때 해도에 오류가 있고 해양지명이 잘못 알려진다면 이는 커다란 해난사고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바다에는 지구 천체의 물리적인 운동에 따르는 밀물과 썰물, 조류, 해류등 자연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멀리 작은 섬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발 밑에까지 가득 차 있던 바닷물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석현상에 의해 어느새 저만치 물러가 있다. 그때 바닷물에 잠겨 보이지 않던 암초들이 수면위로 들어 나 보인다. 이처럼 바닷물에 잠겨 보이지 않던 암(岩)과 초(礁) 하나 까지도 각각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해양지명은 눈에 보이는 섬, 도(島), 서(嶼), 여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초(礁)와 같이 선박의 항해안전과 관련되는 사물과 깊은 바닷속에 있는 해산(海山), 해저분지(海底盆地)의 존재를 파악 해양조석을 고려하여 해양지명을 제정·고시하여야하고 그 위치가 정확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해양지명의 전문성과 특수성이라 하겠다.

4. 해양지명위원회의 발족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그에 따르는 이름이 있다. 조그마한 미물에서부터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덩어리에도 “지구”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다. 해양지명은 지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지명은 1910년 일제가 한국을 병탄 하면서 그 행위를 미화한 한일합방이후 일제에 의해 왜곡되고 비하되어 왔으며 6.25동란을 거치면서 일부는 소멸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하나의 마을 또는 지역에 대한 지명이 부르는 이름과 공식적인 행정지명 또는 지도 등에 표기되는 지명이 제 각각 이어서 시·군·구의 행정처리에서부터 주민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불편이 따랐다. 정부는 이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1958년 7월 25일 국방부 일반 명령 제103호로 국방부 지리연구소 내에 중앙지명위원회를 발족시켜 1961년 4월 22일 지명 124,000건을 고시하고 지명편람을 간행하였다. 그 후 오늘날까지 꾸준히 지명을 제정·변경·폐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3년 1월 29일 국립지리원은 전남 및 강원도 평창군에서 심의 요청한 812건의 지명을 2003년 제1차 중앙지명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1987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 (UNCSGN)*와 국제수로기구 (IHO)**에서는 세계 각국에 대하여 책임 있는 지명 기관(해양지명포함)의 설립을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엔 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 기관의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마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1996년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고 점차 증대되어 가는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 2000년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지명위원회 발족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관계 실무자들의 끈질긴 법률 개정 노력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88호로 수로업무법을 개정하였고 2002년 5월 27일 동법시행령을 개정 비로소 해양지명위원회 발족의 법·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여 2002년 7월 1일 마침내 해양수산부 내에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위원 7인과 각분야의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 7인으로 하는 해양지명위원회의 발족을 이루게 되었다.

5. 해양지명의 정의

현재 불리어지고 있는 해양지명의 정의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海洋(ocean, sea) : 지구상의 해역을 가장 크게 구분한 바다(태평양, 대서양, 동해, 황해, 동중국해 등)
- 海峽(strait) : 육지사이에 끼여 있는 좁고 긴 바다(대한해협, 제주해협 등)
- 灣(gulf, bay) : 육지로 깊게 들어간 바다(경기만, 진해만 등)
- 浦(inlet) : 만보다 작은 바다(만리포, 용암포 등)
- 水路(channel) : 배가 통항할 수 있는 좁고 긴 바다(명량수도, 가덕수도 등)
- 礁(reef) : 선박항해에 위험한 해면 가까이 있는 바위(일향초, 왕돌초 등)
- 堆(bank) : 항해에 위험하지 않는 대륙붕의 얕은 곳(대화퇴, 중앙천퇴 등)
- 海底峽谷(submarine canyon) : 바다밑의 좁고 긴 계곡(원산심해장곡 등)
- 海底盆地(basin) : 바다밑의 깊고 평탄한 지형(울릉분지 등)

*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 UN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1965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로 발족된 유엔기구로 매 5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현재 회원국은 133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79년 2월에 가입, 동 회의의 목적은 지명의 표준화, 로마자표기, 해양지명의 통일화와 국제협력 및 지명교환등 결의사항 마련.

**국제수로기구 (IHO) :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전 세계의 항해안전에 공헌하기 위한 국가간 수로업무 협력 및 수로업무에 관한 과학 및 기술개발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0년에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1921년 설립된 국제수로국(IHB :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을 정부간 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편하여 설립.

- 海底山(seamount) : 해저에서 산과 같이 형성된 지형(볼타해산 등)
- 海底山脈(ocean range) : 해저산이 산맥과 같이 형성된 지형(코차브해저산맥 등)
- 海嶺(ocean ridge) : 해저산맥이 아주 길게 형성된 지형(대서양중앙해령 등)
- 海溝(trench) : 해저의 깊고 좁은 계곡 지형(마리아나해구 등)

위에서 열거한 해양지명의 정의는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되어 있으며 각 대학의 해양관련학과에서 기술하고있는 내용과,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와 일본의 해양관련 서적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 해양지명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명칭에 대한 표준 편람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연안항로지와 해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양지명의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다.

〈표 1〉 해양지명의 종류

해역 구분	동해안(남)	동해안(북)	남해안	서해안(남)	서해안(북)	합 계
퇴(堆)	0	2	3	11	2	18
추(湫)	2	0	0	0	0	2
취(嘴)	3	1	3	1	2	10
서(嶼)	0	2	78	148	13	241
초(礁)	7	4	15	17	6	49
만(灣)	11	43	35	19	8	116
두(頭)	1	0	2	0	0	3
해(海)	1	2	3	4	0	10
해협(海峽)	0	0	4	0	0	4
여(礪, 汝)	0	0	12	27	0	39
열도(列島)	0	0	4	7	5	16
탄(灘)	0	0	7	9	0	16
돌(突)	2	0	0	3	1	6
수도(水道)	0	0	45	39	10	94
암(巖; 岩)	24	54	44	29	13	164
기(崎)	1	1	8	2	5	17
포(浦)	5	12	62	22	31	132
감(坎)	1	0	0	0	0	1
퇴(瀨)	0	2	6	1	3	12
총합계	58	123	331	339	99	950

위에서 예를 들은 해양지명 외에도 마을 주민이나 현지에서 불리어지고 있는 해양지명의 종류와 숫자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공식 간행물에 표기되어있는 해양지명의 사전적, 법적인 표준 편람이 제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해양지명의 분류와 제정·고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양지명과 해양지명위원회에 관하여 고찰을 하였으며 앞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표준해양지명의 제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해양지명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법적, 제도적인 절차와 국제기준에 맞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해를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해양지명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및 범위 등 지명 부여를 위한 기준인 표준편람을 마련하고 해양지명의 조사·연구·정비 및 국제적인 교류·협력 추진.
- (2)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방안 연구와 지도 및 해도 등의 표기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연구, 국

내에 제정·고시하는 해양지명 및 국제해양지명 관리 등의 연구기술 개발.

- (3) 해양지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조사·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현재 시·군·구에 설치되어있는 지방지명위원회 및 문화원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새로운 해양지명의 발굴과 해양관련 용어의 체계확립.
- (4)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대한 해양지명을 조사 정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노력과 예산·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해양지명위원회 만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해안선 조사측량 및 D/B구축 사업의 주요 조사 내용 중에서 지리정보 조사 항목으로 해양지명 조사를 추가하여 지속적인 해양지명 현지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자료조사를 위한 업무 수행시 해양지명 발굴과 각 도·시·군에서 간행하는 도지, 시지, 군지 및 각 지역 문화원 등에서 간행하는 각종 지명관련 향토지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결론을 통하여 표준 해양지명을 제정·고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친밀감을 조성하며 해양 관련기관, 각종 연구기관, 관련학회 등의 연구논문 등에 표준 해양지명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위상 확립에 기여하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국가표준해양지명을 사용한 교재를 제작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역사가 짧은 해양지명위원회의 대내외 활동과 활발한 조사연구 활동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립해양조사원 연안항로지, 동해안 2003. 1, 남해안 2003. 1, 서해안 2000. 12.
2. 국립해양조사원 해도, 동해안(75종), 남해안(58종), 서해안(59종).
3. 수로업무법중개정법률 설명자료, 2001.
4. 해양수산업용어사전, 해양수산부 1999.
5. 해양지명위원회 운영계획 2002. 7.
6. 新訂 海圖의 知識, 日本 成山堂書店 平成 6년 (1994).
7. IHO, Hydrographic Dictionary, Monaco 1994.